

전자상거래

※ 전자상거래(electronic commerce) : 일반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(협정문상 전자상거래 정의 규정 없음.)

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(제15.3조제1항)

□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의 수입·수출에 대하여 관세·수수료·기타 부과금을 면제하는 관행을 유지

※ 전자적으로 전송(온라인 거래)되는 디지털제품은 실질적으로 관세 부가가 불가능하며, 국제적으로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도 무관세 적용
- 1998년 WTO각료회의에서 “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각료선언”을 채택하여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후 이러한 결정의 효력을 연장해 오고 있음.

참고: 디지털 제품

○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·문자열·동영상·이미지·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(협정 제15.9조)

- 우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‘디지털콘텐츠’ 또는 대외무역법상의 ‘전자적 형태의 무체물’ 정의와 유사

- 전달매체(예: CD 등)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도 무관세 적용

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예외 (제15.3조제2항~제5항)

- (내국민대우) 창작·제작·발행·저장·전송·계약·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것이 상대국 영역이거나 상대국 국민에 의해서라는 것을 근거로한 차별 또는 자국의 디지털제품을 달리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불리한 대우 금지
- (최혜국대우) 상대국 영역에서 또는 상대국 국민에 의해 창작·제작·발행·계약·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에 대해 비당사국 영역 또는 비당사국민의 동종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 금지
- 협정 제11장(투자), 제12장(국경간 서비스무역), 제13장(금융서비스)에 따라 채택·유지된 조치에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적용 배제

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(제15.4조)

- 전자거래 당사자는 자율적으로 전자인증수단 선택 가능
 - 다만, 전자금융거래, 전자처방전과 같은 고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국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전자인증수단 요구 가능